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공고)

주주님의 댁내 평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17년 03월 30일(목) 오전 9시 00분

2.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번지 섬유센터빌딩 17층 중회의실

3.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9기(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별첨1. 정관변경안)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문양근 선임의 건 (재선임)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우 선임의 건 (재선임)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조성규 선임의 건 (재선임)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구본순 선임의 건(신규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성규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남문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구본순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별첨2. 변경안)
-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3월 25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30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브레인콘텐츠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20일 ~ 2017년 3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7년 03월 15일

주식회사 브레인콘텐츠
대표이사 장 대 용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별첨1. 정관변경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67.(내용생략) (신설) 68. 위 각호에 관련된 유통업 69.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무 및 판매유통업 70.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업 71.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업 7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재화 용역 서비스의 해외 중개, 수출, 판매 및 투자업 73.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67.(현행과 동일) 68. 핀테크 서비스업(신설) 69. 금융 대행업(신설) 70. 전자금융업 및 부가통신사업(신설) 71. 전자금융 시스템공급 및 운용관련업(신설) 72. 전자금융 관련기기 판매 및 임대업(신설) 73. 전자금융업 및 부가통신사업(신설) 74. 전자인증서비스업(신설) 75. 포인트마일리지사업(신설) 76. 위치기반을 이용한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신설) 77. 전자화폐 도소매 및 서비스업(신설) 78. 통신상품권 도소매 및 서비스업(신설) 79.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신설) 80. 학원사업 및 교육프랜차이즈 사업 일체(신설) 81. 교육관련물 제조, 판매 및 대여업(신설) 82. 교육정보화 사업 및 관련 경영컨설팅업(신설) 83. 평생교육시설운영업(신설) 84. 서적 및 교재 도, 소매업(신설) 85. 강사 파견업(신설) 86. 학습지 개발, 제작, 출판, 배부사업(신설) 87. 외국인강사 알선업(신설) 88. 학원컨설팅업(신설) 89. 입시관련 이벤트업(신설) 90. 입시 정보 제공업(신설) 91. 출판, 인쇄 및 광고업(신설) 92. 위 각호에 관련된 유통업 93.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무 및 판매유통업 94.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업 95.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업 9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재화 용역 서비스의 해외 중개, 수출, 판매 및 투자업 97.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다각화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존의 이사또는감사를해임하는경우와본조및본정관의제33조와, 제34조, 제35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존의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와 본조 및 본정관의 제33조와, 제34조, 제35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문구수정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신설)	제43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조문신설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4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조문번호 변경
제6장 감 사	제6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제44조(감사의 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한다.	제 45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법률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조문내용 변경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제 46 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조문내용 변경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이사회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 참석과 감사 선임에 표결한 수 있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이와 같은 결의방법을 적용할 안건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시 하여야 한다.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감사의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조문 삭제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7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제4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8 조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조문 삭제
제50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번호 변경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 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한다.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구수정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이하동일 제54조(이익배당) 이하동일 제55조(분기배당) 이하동일	제52조(이익금의 처분) 이하동일 제53조(이익배당) 이하동일 제54조(분기배당) 이하동일	조문번호 수정
	부칙 제20차 개정 : 2017년 03월 30일	시행일 명시

별첨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하이쎌(주) 정관 제 39조 2항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브레인콘텐츠(이하 '회사'라고 한다.) 정관 제 39조 2항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사용자지위, 상법상 임원) 및 회사측에서 선임된 등기, 비등기임원(근로자)으로서 상근인자를 말한다.	제 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사에서 선임된 이사 이상의 비등기 임원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등기 임원을 말한다.	
(신설)	제 3조 【지급 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항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하는 경우	
제 3조 (퇴직금 산정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지급율표]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율과 재임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보수월액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지급율표]에서 정하는 지급율 적용시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통상적인 퇴직금으로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날 기점으로 각각의 퇴직금 합계액으로 지급한다.) 3. 임원의 재직기간 중 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의 기준으로 하여 최종 직급에 따른 지급율로 지급한다. 4. 임원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해외근무 중 퇴직한 경우 국내근무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율로 지급한다.	제 4조 【퇴직급여의 계산】 1. 퇴직급여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재임연수*기준지급률]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기 1항의 기준지급률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회 장 : 3.0배수 ② 부 회 장 : 2.5배수 ③ 총괄대표 : 2.0배수 ④ 대표이사 : 1.6배수 ⑤ 부 사 장 : 1.5배수 ⑥ 전무이사 : 1.3배수 ⑦ 상무이사 : 1.2배수 ⑧ 이사, 감사, 기타 임원에 준하는 자 : 1.1배수 3. 재임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기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때, 재임연수는 제 5조를 따른다. 4. 해외 근무 중 퇴직한 경우에는 국내 근무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제 5조 【재임연수의 계산】 1. 재임연수는 선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2.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4. 재임 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5. 재임 중 휴직 및 무보수 재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신설)	제 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연임(連任)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제 3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임원의 직급은 퇴임 시의 최종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 5조 (해임의 경우) 1. 등기임원(사용자 지위, 상법상 임원)의 경우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 7조 【해임의 경우】 1. 등기임원(사용자 지위, 상법상 임원)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지급액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결의로 퇴직금을 감액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조 (관계회사로의 전임) 1. 임원이 관계회사로의 임원으로 전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은 최후로 재임한 회사에서의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에 각 회사에서의 직급별 퇴직금 지급율과 재임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8조 【관계회사로의 전임】 1. 임원이 관계회사로의 임원으로 전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은 최후로 재임한 회사에서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각 회사에서의 직급별 퇴직금 지급률과 재임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제 9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50% 이내 ② 순직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100% 이내 2.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조 (퇴직위로금의 특례) 1.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위로금 지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 중 적립형 또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재원확보를 위해 당해 보험을 해지(해약)하고 받은 환급금(보험금) 또는 사망, 재해상해, 헬스케어 등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이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상회할 경우 그 잔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당해 보험을 해지(해약)하지 않고 퇴직임원에게 승계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0조 【퇴직 위로금】 1.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 1항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별도로 현금 또는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퇴직위로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을 해지(해약)하지 않고 퇴직 임원에게 승계하여 퇴직위로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제 11조 【유족위로금 및 보상금의 지급】 1. 회사는 임원이 재직하는 동안 사망, 장해 또는 질병 발생 시 당해 임원의 유족 또는 본인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임원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 또는 상해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망 등 보험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제세공과금 등 비용 제외)은 당해 유족 또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 7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수령권자) 1.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이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제 12조 【퇴직금 등의 지급 및 수령권자】 1.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외 회사의 자산(재고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보험금	

2.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서 분묘 기념비설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 등의 수령권자는 퇴직자이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3.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퇴직자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분묘 기념비설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3조 【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17년 03월 30일부로 시행한다.	

이사선임의 건

가. 이사 후보자 관련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비고
사내이사	문양근	68.12.27	3년	(주)브레인콘텐츠 총괄대표(현)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총괄대표	본인	이사회	재선임
사내이사	이승우	75.02.07	3년	(주)브레인콘텐츠 경영기획실장(현) 파미셀(주) 대외협력실 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재선임
사외이사	조성규	67.04.07	3년	법무법인 선유 대표변호사(현) 서울중앙지점 검사 역임 사법연수원 30기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관계없음	이사회	재선임
사외이사	구본순	70.02.15	3년	정진회계법인 이사(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관계없음	이사회	신규선임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감사위원 후보자 관련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비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성규	67.04.07	3년	법무법인 선유 대표변호사(현) 서울중앙지점 검사 역임 사법연수원 30기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관계없음	이사회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남문	71.09.10	3년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현)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사법연수원 32기	관계없음	이사회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구본순	70.02.15	3년	정진회계법인 이사(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관계없음	이사회	신규선임